

# 예산총칙

202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1,305,000,000	39,150,000
일반회계	1,182,500,000	35,475,000
특별회계	122,500,000	3,675,000
공기업특별회계	56,800,000	1,704,00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5,900,000	1,077,00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900,000	627,000
기타특별회계	65,700,000	1,971,000
수질개선특별회계	6,639,000	199,17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141,000	94,23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640,000	19,200
주택사업특별회계	370,000	11,100
치수사업특별회계	22,500,000	675,000
주차장특별회계	4,825,000	144,750
대지보상특별회계	286,000	8,580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0,253,000	607,590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6,592,000	197,760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00,000	12,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4,000	1,62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786,035천원으로 한다.  
(일반예비비 10,000,000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786,035천원)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9,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